「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9조(관세청장의 처분) ① <u>법 제119조제</u>	제9조(관세청장의 처분) ① 법 제119조제	ㅇ 법 조문과 일치
2항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2항에서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란	
<u>처분"이란</u> 심사청구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로 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사청구의 접수절차) ① • ②	제10조(심사청구의 접수절차)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3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접수사실		
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		
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처분청이 접수한 경우 : 관할본부세 과장 및 관세청장
- 2. 처분청이 아닌 세관장이 접수한 경우 : 처분청 • 관할본부세관장 및 관세청장 3. 관세청장이 접수한 경우 :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

④ ~ ⑨ (생 략)

제14조(직권시정) ① 처분청은 청구의 대 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권 시정 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정 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심사청구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1. ~ 3. (생 략)
- 4. 그 밖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직 권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 건

1 <u>경우:</u>
2 <u>경우:</u>
3 <u>경우:</u>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직권시정) ①
1. ~ 3. (현행과 같음)
4. 특정사안이 심사청구(관세청 과세전

일한 내용・쟁점・적용법령으로 제기

ㅇ 처분청의 직권시정 대상 적부심사청구를 포함)와 심판청구가 동 추가로 신속한 납세자권익 보호

ㅇ 띄어쓰기 수정

ㅇ 띄어쓰기 수정

ㅇ 띄어쓰기 수정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 <u>다음 각 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한 납세자 보호 및 권리구제를위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 등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행정관리담당관은 관세청소관 부서에 직권시정에 대한 의견을조회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
의 청구건이 인용결정된 사안인 경우
5. 품목분류에 관한 불복청구 처리절차
가 진행되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시정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③ (현행과 같음)
4
<u>제1항 각 호의</u>

관세청장의 직권시정 요구로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

2. 특정사안이 심사청구(관세청 과세전 | <삭 제> 적부심사청구를 포함)와 심판청구가 동 일한 내용・쟁점・적용법령으로 제기 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 의 청구건이 인용결정된 사안인 경우 3. 품목분류에 관한 불복청구 처리절차 가 진행되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5) (생 략)

안내)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의 의견진술 안내에 따라 관세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 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를 결정하 는 기관(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관 세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우편, FA X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제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 ③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회의장 출입 및 의견진술 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불복대리업 무 담당 지정서를-----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 ㅇ 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함

⑤ (생략)

- 제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① <u>영 제</u> 147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관세청장 이 지정하는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및 관세청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② 영 제147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관 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 18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 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 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 으로서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0명을 위촉하되. 직능별·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부 패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세청 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 한 사람은 제외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①	<u>영 제</u>
144조의6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세
<u> 청장이 임명하는</u>	

2	영	제144조의6제4항제2호나목에	따
<u>라</u>	. — — —		

 <u>관세 ·</u>	법률	・재정	에	<u> 관한</u>	
 				<u>22명</u>	을

개정 관세법 시행령('23.7. 1. 시행 예정) 반영

이 위촉 제한 규정이 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제6항에 반영되어 고시에서
 삭제

③ • ④ (생 략)

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제148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략)

- ⑦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47 조제8항에 따라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u>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u>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 니한 경우

<신 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
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⑥ (현행과 같음)
⑦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
6 본인 또는 다른 위워이 과세심사위워

이 개정 관세법('23. 7. 1. 시행 예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이 관세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사전진단 절차 마련

ㅇ 관세심사위원임을 알리

⑧ (생략) <신 설>

제24조의2(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처분청은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 호의2서식의 불복방법 통지서로 결정기 간이 경과한 날부터 관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147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라 일선세 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 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 는 행위 금지 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8) (현행과 같음)
- ⑨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 '23. 7. 1. 시행 예정인 개정 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5조 및 제26조의 관세심사위원회 또한 같다.

제24조의2(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ㅇ 개정 관세법 시행령('23.

제144조의6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본 부세관장이----

관세법 시행령에 수당 지급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부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려

ㅇ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명확 히 구분하여 불복방법 안내

7. 1. 시행 예정) 반영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법률·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을 위촉하되, 직능별·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결정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②・③ (생략)
- ④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결정부서의 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제148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u></u> 관세·법률·재정에	관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
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이 위촉 제한 규정이 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제6항에 반영되어 고시에서 삭제

- 이 개정 관세법('23. 7. 1. 시행 예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이 관 세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절차 마련

⑤ (생략) <신 설>

<신 설>

제26조(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147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본부세 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 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 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 로서 법률 • 재정 •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5명을 위 촉하되, 직능별·직종별로 균형있게 포 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결정

- ⑤ (현행과 같음)
- ⑥ 영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관 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이란, 별표 1 과 같다.
- ⑦ 영 제144조의6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두는 일 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 제26조(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이 개정 관세법 시행령('23. 제144조의6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7. 1. 시행 예정) 반영

 - ----관세 법률 재정에 관한-

-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 세관 규정
- ㅇ 본부세관별 일선세관 분 과 관세심사위원회 구성

ㅇ 위촉 제한 규정이 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④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 며 세관운영과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 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 도록 하여야 한다.

(5) · (6) (생략)

제2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등) ① 세관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하 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청 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결정지연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세관장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2)	• (3)	(현행과	같음
(<u> </u>	(0)	1401	-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 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 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5)·(6) (현행과 같음)

-----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의2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제43조(결정지연의 통지) ------ | ㅇ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

제6항에 반영되어 고시에서 삭제

ㅇ 개정 관세법('23. 7. 1. 시 행 예정) 및 「공직자의 이 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관 세심사위원회 위원이 관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 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절차 마련

제2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등) ① - ㅇ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 신설

연의 통지(서식)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u>지체</u> 없이 별지 제13호의2 서식으로 청구인 <u>에게</u>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u>지체</u> 없이 별지 제13호의2서식으로 청구인에 게 -----

[별표 1]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제25조제6항 관련)

김포
안양, 천안, 청주, 대전, 속초, 동해, 성남, 파주
김해, 용당, 양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 경남서부
수원, 안산, 평택직할세관
울산, 구미, 포항
광양, 목포, 여수, 군산, 제주, 전주

[별표 2] 본부세관별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제25조제7항 관련)

본부세관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인천공항본부	김포
서울본부	안양, 천안, 청주, 대전, 속초, 동해, 성남, 파주
부산본부	김해, 용당, 양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 경남서부
인천본부	수원, 안산, 평택직할세관
대구본부	울산, 구미, 포항
광주본부	광양, 목포, 여수, 군산, 제주, 전주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unipass.customs.go.kr</u>)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에는 해당되는 뜻(서호	게 √표를 입니다. 접수일자	접수증 발급일자	처리기간 90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한함				
청	주 소							
· 구 인		직함	이메일					
	청구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	<u> </u>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신동의	※ 본 청구에 대한 진행정보, 세관장의견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ᅯ	처 분 청	세관장	허분유형 []고지처분 []경정청구기각처분 []기타처분				
청 구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대	품명 및 규격							
상 	처분의 내 용	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납부고	고지				
처분	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를 받은 날 : 20 년 - 원	월 일)				
0 .	의신청을 한 날	20 년 월 일(결정의 통지를	를 받은 날 : 20 년 : 음	월 일)				
		* 불복이유를 입력하시거나, 별도 화일(종	등이)로 작성하여 첨부(제출)하실	실 수 있습니다.				
		* 경정통지서 등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시거나, 양이 과다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눌	불 복 의 이 유	복 의 이 유 *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전자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해당 결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통관포탈 : 인터넷으로 수출입신	l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 ^k	네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관	·세법」 제122조 및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u>.</u> 고시」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관서	청장귀하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	위임자 (서명 또는								명 또는 인)	
임		관세 • 법무법인명	성명		구	분	[]관세사	[]변호사
장	장대리인	주소			전화	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	스번호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의2서식]

이의신청 불복방법 통지서

청구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소

귀하가 20 년 월 일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법 132조 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나 업무 형편상 부득이하여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결정기간이 경과한 20 년 월 일부터 <u>「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u>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00세관장

직인

공지사항

※ 본 통지는 귀하가 제기한 청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귀하의 청구가 각하되었거나 앞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unipass.customs.go.kr</u>)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접수담당자

처분청

(서명 또는 인)

]에는 애딩되는 굿 [©]		접수증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접수반	!오 	접수일자		접구등 말림	일사	^^	허리기간 30일		
	상호(법인명)			사입	ゴ자등록 반	호			
	성명(대표자)			주	민등록번	호	*개인에 현	 한함	
청	주 소								
구		직함			이메일				
인	청구담당자	성명			휴대전	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	호			
	수신동의	※ 본 청구에 대한 진행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세관장의견		│ 정보를 실시?	간으로 제공받	으실 수 있습니다		
力	처 분 청	세관	장 차	H분유형	[]고지처	분 []경정	성청구기각처분	 []기타처분	
청 구	수입신고번호		'		신고일자				
대	품명 및 규격								
상 	처분의 내 용	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닡	납부고지			
처분	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	의 통지를	를 받은 날	: 20 년	일 일	<u> </u>		
불	* 불복이유를 입력하시거나, 별도 화일(종이)로 작성하여 첨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정통지서 등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시거나, 양이 과다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전자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해당 결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통관포탈: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전자민원>처리현 바랍니다.	
「관	세법」 제132조 등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	리에 관힌	· 고시」 저	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년	합니다. 월 일	
OC) 세관장 _{귀하}		청구인				Ŀ	실 설 (서명 또는 인)	
O.I.		1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거 ¹ 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우에 한합니		· 위임합니[다.	(서명 또는 인)	
위 임		관세 • 법무법인명	성명			구 분	[]관세사	[]변호사	
장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1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4	<u> </u>		팩스번호		
	이의신청서 접수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청구금액

이의신청 결정서

사건번호	이의 호
청구인	주 소: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위대리인	주 소:
	성 명:
처분청	세관장

위 당사자간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있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이유: 붙임(사실,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쟁점 및 판단을 기재할 것)

20 년 월 일

○○세관장

직인

공지사항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u>관세법 제119</u> $\underline{$ 조에 따른 <u>심사청구</u> 및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unipass.customs.go.kr</u>)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반	<u>ব</u> ক	접수일자	접	성수증 발급일 지	<u>.</u> -	Ţ.	리기간 30일		
	상호(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	등록번호		*개인에 현	한 한 함	
청	주 소			I	l				
구		직함		(이메일				
인	청구담당자	성명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Ĭ	팩스번호				
	수신동의	※ 본 청구에 대한 진행정보, 기		등 각종 정보를	를 실시간으로 🤅	제공받	으실 수 있습니다	ŀ.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청 구	통지서 번호			통지	세관		세	관장	
대	수입신고번호			신고	.일자				
상	품명 및 규격								
과	세전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	를 받은 날	날: 20 년	월 일)				
불	불복의이유	* 불복이유를 입력하시거나, 별 * 경정통지서 등 증거서류는 별 *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힐 황조회"에서 신청하거나, 별자 © 인터넷통관포탈 : 인터넷으로	년도로 첨부하 한 경우 관세경 지 제15호서스	시거나, 양이 괴 청전자통관시스팀 나의 "의견진술신	나다한 경우 우 넴(portal.custo 청서"를 해당	편으로 ms.go 결정기	발송하여 주시기 .kr) "업무처리>? 관에 제출하시기	전자민원>처리현 바랍니다.	
	관세법」 제118조기 청구를 합니다.	제2항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어	∥ 관한 고시_	」 제40조어	따2	나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	
	8 2 H99.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반세청장) 귀하 							
OI		2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¹ 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항을	위임합니다.	(서명 또는 인)	
위임		관세 • 법무법인명	성명		구	분	[]관세사	[]변호사	
장	대리인	주소			전화	번호			
		휴대전화번호	0	기메일주소			팩스번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접수담당자

처분청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청구금액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3호의2서식]

결정지연 통지서

	상호(법인명)
청구인	성명(대표자)
	주 소

귀하가 20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나 업무 형편상부득이하여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도래 등으로 세관장의 경정·고지처분이 있을 경우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고지처분을 받은 후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장

직인

공지사항

※ 본 통지는 귀하가 제기한 청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귀하의 청구가 각하되었거나 앞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복대리업무 담당 지정서

처리기간

즉시

※ 위임받은 법인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 지정서 작성·제출

담당 관세사·변호사 지정서								
사건번호		청구인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불복대리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아래 대리인 중 대	표대리인에 √] 표시					
	□ 관세사 ○○○	휴대전화	이메일					
	□ 관세사 ○○○	휴대전화	이메일					
불복대리	□ 변호사 ○○○	휴대전화	이메일					
지 정 자	□ 변호사 ○○○	휴대전화	이메일					
	※ 불복진행상황안내, 사전열람자료 등은 대표로 지정된 대리인에게만 발송되니, 대표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대리인 이외에는 관세심사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 . .

○○○관세·법무법인 (직인) 대표자 ○○○

관세심사위원회 귀중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제6항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연번	연번 진 단 내 용						
1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1	1 최근 5년 이대에 세된 또는 원세정에서 8구년으로 인구하였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예	아니오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	()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	예	아니오				
3	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 ,	()				
	5년이 지나지 않았다.	()	()				
4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수출입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THE TOTAL CONTROL OF THE MET MET MET MET MET MET MET MET MET ME	()	()				
5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등을	예	아니오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0	등을 진행 중이다.	()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	예	아니오				
7	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0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8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에'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 - - 타당한	한 사유가				
9)	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그 분 근						
	성명 :						

서 약 서

※ 관련: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직위 : ○○○○○ 심의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8.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관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 금지
- 9.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성명: (서명)

OOOO년 제O회 관세심사위원회 사전진단서

	회의	개요	:	0000년	제○회	관서	[심지	위위	린회	
--	----	----	---	-------	-----	----	-----	----	----	--

☐ 안건 당사자

안건번호	청	구	인	대	리	인

■ 진단내용을 확인하여 체크사항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관세법시행령] 제144조의4제7항제2호 : 위원 회피사항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건민			아니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에 대리인 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및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자 해당여부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아니오	
(사적이해관계자) 청구인 및 대리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원의 가족			
② 위원의 가족 이 임원·대표·관리자·사외이사 인 개인·법인·단체			
③ 위원의 가족 이 대리·자문·고문 하는 개인·법인·단체			
④ 위원이 위원 위촉 전 2년 내 재직 한 법인 단체			
⑤ 위원이 위원 위촉 전 2년 내 대리·자문·고문 하는 개인·법인·단체			
⑥ 위원이 주식·지분 을 보유 한 법인·단체			
⑦ 위원의 금전 거래 상대방			
⑧ 최근 2년 내 퇴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내 위원의 동일부서			
지휘 감독자			
⑨ 위원의 현재 지휘·감독 하는 상급자			

※ 본인은 ○○○○년 제○○회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써「관세법 시행령」제144조의7제7항 '위원 회피 사항'및「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 으며,

또한「관세법」제127조제3항 및「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제20조에 의거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비밀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